

〈譯註〉

## 『舊唐書』 권7, 睿宗本紀 譯註\*

조 재 우 \*\*

### 【일러두기】

이 역주는 2016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역사기초자료연구) 선정과제인 “동아시아 속의 한국고대사 비교사료학 기초 연구: 구당서 본기를 기본 텍스트로”의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에 『삼국사기』 등 한국사 문헌에 기술된 한중관계사 관련 사료를 해당 시기에 추가함으로써 한국고대 한중관계사를 동아시아사의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하고, 비교사료학의 관점에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에 전하는 동일 사건 혹은 유관 사료를 비교·검토하여 각주에 보충하였다.

### 『舊唐書』 권7, 睿宗本紀

睿宗玄眞大聖大興孝皇帝는 휘가 므이다. 高宗의 여덟째 아들로, 中

\* 『舊唐書』 권7, 睿宗本紀, 中華書局標點本, 151~163쪽을 저본으로 하였다(이하 中國正史는 中華書局標點本 이용). 원문을 병기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경우에는 [ ]를 사용하고 용어를 설명할 경우에는 ( )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조재우, 『舊唐書』 권7, 中宗本紀 譯註, 『동국사학』 63, 2017 참조.

\*\*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수료.

宗의 동모제이다. [고종] 龍朔 2년(662) 6월 기미일(1일) 長安에서 태어났다. 그 해 殷王에 봉해졌고, 冀州大都督·單于大都護·右金吾衛大將軍을 遙領하였다. 성장하자 겸손하고 공손하였으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다. 학문을 좋아하였고 초서와 예서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문자훈고의 서책을 좋아하였다. 乾封 원년(666) 豫王으로 옮겨 봉해졌다[徙封]. 總章 2년(669) 冀王으로 옮겨 봉해졌다. 황상의 초명은 旭輪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旭’자를 없앴다. 上元 2년(675) 相王으로 옮겨 봉해졌고 右衛大將軍에 배수되었다. 儀鳳 3년(678) 洛[州]牧으로 옮겨졌고 攄으로 개명하였으며 豫왕으로 옮겨 봉해졌다. [중종] 嗣聖 원년(684) 무척천이 臨朝하여 중종을 廬陵王으로 폐위하고 豫왕을 황제로 옹립하였는데, 여전히 臨朝稱制하였다. [武則天 天授 원년(690)] 혁명이 일어나 국호를 周로 고치고 황제를 皇嗣<sup>1)</sup>로 강등시켰다. 이전처럼 이름을 른이라 하였고 東宮으로 이거하게 하였는데, 그 기구와 의장 일체는 황태자에 비견되었다. 聖曆 원년(698) 중종이 房陵[縣]에서 돌아왔다. 황제는 수차례 병을 핑계로 조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 중종에게 태자위를 양보하길 청하였다. 무척천이 마침내 중종을 황태자로 세우고 황제를 상왕에 봉하였는데, 다시 단으로 개명하였고 太子右衛率에 제수되었다. 長安 연간(701~705)에 司徒·右羽林衛大將軍에 배수되었다. 무척천이 처음 臨朝한 이래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왕실에는 누차 변고가 발생하였지만, 황제는 매사에 공손하고 겸소하였고 물러나 사양하였으니 마침내 화를 면하였다. [중종] 神龍 원년(705) 張易之 형제를 주살한 공으로 安國相王으로 칭호가 올라갔고 太尉로 옮겨졌으며 實封이 더해졌다. 그 해 皇太弟로 세워졌으나 고사하며 받지 않았다.

1) 원래 ‘황위의 계승자’라는 뜻이지만 황위계승자의 전통과 지위에서 볼 때 황태자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칭호이다. 자세한 사항은 閻守誠·吳宗國, 『당현중』(임대희·우성민 옮김), 서경문화사, 2012, 12~13쪽 참조.

[중종] 경룡 4년(710) 여름 6월 [임오일(2일)] 중종이 붕어하자 韋庶人 이 臨朝하여 그 당여를 끝어다 임용하고 정권을 나누어 장악하게 하였는데, 황제의 위망과 실력이 평소 높은 것을 꺼려하여 몰래 위해하려고 모의하였다. 경자일(20일) 밤 臨淄[郡]王 이용기[諱]<sup>2)</sup>가 太平公主의 아들인 薛崇簡, 前 朝邑[縣]尉 劉幽求, 長上果毅 麻嗣宗, 苑總監 鍾紹京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北軍으로 들어가 韋溫·紀處訥·宗楚客·武延秀·馬秦客·葉靜能·趙履溫·楊均 등을 주살하고 위씨와 무씨의 당여들을 모두 주륙하였다.<sup>3)</sup> 신축일(21일) 황제가 少帝를 끼고 安福門樓<sup>4)</sup>에 거둥하여 백성들을 慰諭하고, 천하에 大赦를 내려 현재 수감된 죄수[見繫囚徒]<sup>5)</sup> 가운데 常赦에서 사면하지 않는 자들도 모두 사면[赦除]하였다. 내외문무관 가운데 3품 이상에게는 爵 1級을 내리고 4품 이하에게는 [散官] 1階를 더하였고, 親皇 가운데 3등 이상에게는 [산관] 2계를 더하고 4등 이하 및 諸親에게는 勳 3轉을 내렸다.<sup>6)</sup> 천하의 백성에게는 금년 田租의

2) 『구당서』 권7, 예종본기에는 현종의 이름(즉 李隆基)을 피휘하여 ‘諱’라고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하여 (淸) 錢大昕의 『廿二史考異』 권57, 舊唐書1, 睿宗紀 조에서는 “按, 太宗·高宗·中宗篇中直書高·中·睿三宗之名, 高祖篇中, 但書太宗而不名, 此紀於明皇名稱諱, 於例初未畫一. 蓋五朝之史, 成於明皇之世, 故特稱諱, 後來又承其舊文, 而不能是正爾”(上海古籍出版社, 830쪽)라고 한다.

3) 『全唐文』 권99, 襄王重茂, 『誅韋氏制』, 中華書局, 1020~1021쪽. 임치왕 이용기의 정변 과정은 『資治通鑑』 권209, 예종 경운 원년(710) 6월 조, 中華書局, 6644~6648 쪽에 상세하다. 아울러 閻守誠·吳宗國, 『당현종』, 31~44쪽도 참조.

4) 장안의 황성 서쪽에 위치한 문이다. (淸) 徐松, 『唐兩京城坊考』 권1, 西京, 皇城, “西面二門, 南曰順義門, 北曰安福門”(中華書局, 10쪽). 이하, 장안의 궁성(태극궁)·황성·외곽성의 구조는 세오 다쓰히코(妹尾達彦),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최재영 옮김), 황금가지, 2006, 125쪽 및 137쪽의 그림 참조.

5) 繫囚·見徒라고도 한다. ‘繫囚’는 범죄가 발각된 후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 ‘見徒’는 판결 후 徒役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말이다. 자세한 사항은 佐竹昭, 『古代王權と恩赦』, 雄山閣出版, 1998, 91~92쪽 참조.

6) 『冊府元龜』 권80, 帝王部80, 慶賜2, “景龍四年六月庚子夜, 臨淄王平韋庶人. 辛丑, 相王奉少帝御安福門樓, 大赦, 内外文武官三品已上賜爵一等, 四品已上加一階, 應

절반을 감면하였다. 임치왕을 平王으로 進封시키고 설송간을 立節郡王으로 삼았다. 종소경을 中書侍郞, 유유구를 中書舍人으로 삼아 모두 參知機務하게 하였고 실봉을 더하였다. 그 외의 나머지는 차등을 두어 봉작과 포상을 내렸다.<sup>7)</sup> 사자를 보내 諸道에 나누어 가서 宣諭하게 하였고, 아울러 均州에 가서 譙王 [李重福을] 위로하게 하였다.<sup>8)</sup> 임인일(22일) 左千牛中郞將·宋王 [李]成器가 左衛大將軍, 司農少卿同正員·衡陽[郡]王 [李]成義가 右衛大將軍, 太府少卿同正員·巴陵[郡]王 [李]隆範이 左羽林衛大將軍, 太僕少卿同正員·彭城[郡]王 [李]隆業이 右羽林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sup>9)</sup> 黃門侍郞 李日知가 同中書門下三品에 임명되었다.<sup>10)</sup> 계묘일(23일) 殿中[監]·兼知內外閑廐·檢校龍武右軍 및 押左右廂萬騎·平王 이용기[諱]<sup>11)</sup>가 동중서문하삼품에 임명되었다. 中書侍郞·潁川郡公 종소경이 中書令에 임명되었다. 中書令·鄴國公 蕭至忠이 許州刺史, 兵部尚書·逍遙公 韋嗣立이 宋州刺史, 中書侍郞 趙彥昭가 絳州刺史에 임명되었는데, 소지충·위사립·조인소는 특별히 [자사의] 직위에 두었다.<sup>12)</sup> 吏部尚書 張嘉福을 懷州에서 주살하였다. 그 날 왕공과 백관들이

入五品不限以年考, 四等已下及諸親賜勳三轉”(鳳凰出版社, 873쪽).

7) 『唐大詔令集』 권123, 政事·平亂上, 「平內難赦, 中華書局, 656~657쪽.

8)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壬寅(22일), …… 遣十道使齋廩書宣撫, 及詣均州宣慰譙王重福”(6648쪽).

9)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癸卯(23일), 以平王隆基爲殿中監·同中書門下三品, 以宋王成器爲左衛大將軍, …… 光祿少卿嗣道王微檢校右金吾衛大將軍, 微, 元慶之孫也. [胡三省注: 道王元慶, 高祖之子]”(6648쪽).

10)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癸卯(23일), 以黃門侍郞李日知·中書侍郞鍾紹京並同中書門下三品”(6648쪽).

11) (清) 王鳴盛, 『十七史商榷』 권71, 睿宗紀首脫誤, “睿宗名旦, 玄宗名隆基, 或稱諱, 或稱本名, 諱是原本, 本名是校者所改, 改未淨. 下文‘治’字或稱‘治’, 或稱‘理’, 仿此”(上海書店, 617쪽).

12) 『新唐書』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6월 조, “壬寅(22일), …… 貶汴王崑爲沁州刺史, 蕭至忠許州刺史, 韋嗣立宋州刺史, 趙彥昭絳州刺史, 崔湜華州刺史”(116쪽).

표문을 올려 모두 국가에 병란이 많아 마땅히 장년의 군주를 세워야 한다고 하니, 소제가 못 사람들의 신망이 돌아가는 바에 따라 [상왕에게] 황위에 오르길 청하였다.

갑진일(24일) 소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길,

자고로 제왕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를 내리고 형제간의 계승은 전례에도 있는 일이다. 짐이 연약한 고아의 몸으로 집안의 고난마저 당하였으니, 되돌아보건대 이는 식견이 몽매하고 치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망망한 사해는 장차 어디로 귀속될 것인가, 누대에 걸쳐 선조들이 이룩하신 크나큰 기틀이 땅에 떨어지려 하노라. 왕실에 병란이 많아 장년의 군주를 택해야 한다고 하니, 여러 신하들과 함께 현명한 군주를 추송하려 하노라. 숙부 상왕은 고종의 아들로 예전에 천하를 선제께 양보하였으며,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관대하고 소탈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다. 신통 연간(705~707) 초 이미 선제의 분명한 뜻이 있어 장차 상왕을 황태제로 세워 부군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상왕이 간곡히 사양하여 책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동궁의 궐위가 여러 해 동안 이어졌다. 선제께서 새벽녘에 붕어하시고 창졸간에 병란이 일어나 황후가 황명을 칭하며 어린 나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삼가 선제께서 생전에 생각하셨던 바를 받들어 유명을 따르고자 하니, 위로는 선제의 뜻을 펼치고 아래로는 창생의 마음에 따르며 도위의 문장을 굽어 살피고 조종의 공덕을 좇으려 하노라. 금일을 택하여 숙부 상왕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길 청하노라. 짐은 본번으로 물러나 옛 잡저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군신백관들은 짐의 말을 공경히 받들어 우리 천자의 아름다운 시절을 도와서 우리 대당의 훈업을 빛내도록 하라. 원근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라.<sup>13)</sup>

13) 『당대조령집』 권38, 諸王·遜位, 「溫王遜位制」, 170쪽.

라고 하였다. 상왕이 표문을 올려 사양하며 말하길,

신은 종묘사직의 일이 위중하고 집안과 나라에 대한 정이 깊어 거대한 역적을 주멸하여 후주를 받들려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제서를 받건대 외람되어 황위를 넘겨주려 하시니, 신은 허박하여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거듭 놀라고 두려워 목이 메는 심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sup>14)</sup>

라고 하였다. [소제가] 制答을 내려 말하길,

황위는 지극히 고귀하고 천하는 지극히 공정하니, 군주가 황위에 오르는 경우는 대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다. 상왕은 선제의 옛 뜻으로 창생이 추앙하고 있으며, 용의 광채가 황궁에 빛나 공경들이 진실로 바라고 있다. 청컨대 앞서 내린 짐의 뜻에 따라 혹여나 추앙하지 말라.<sup>15)</sup>

라고 하였다. 이에 소제가 別宮에서 양위하였다.<sup>16)</sup> 이 날 황제위에 올라 承天門樓(즉 장안 궁성=태극궁의 정문)에 거둥하여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常赦에서 사면하지 않는 바도 모두 사면[原]하였다. 내외관 4품 이상

14) 『전당문』 권19, 睿宗皇帝2, 「讓禪位表」, 230쪽.

15) 『전당문』 권99, 襄王重茂, 「答相王讓位詔」, 1022쪽.

16)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劉幽求言於宋王成器·平王隆基曰, ‘相王疇昔已居宸極, 羣望所屬, 今人心未安, 家國事重, 相王豈得尚守小節, 不早就位以鎮天下乎!’ 隆基曰, ‘王性恬淡, 不以代事嬰懷, 雖有天下, 猶讓於人, 況親兄之子, 安肯代之乎!’ 幽求曰, ‘眾心不可違, 王雖欲高居獨善, 其如社稷何!’ 成器·隆基入見相王, 極言其事, 相王乃許之. 甲辰(24일), 少帝在太極殿東隅西向, 相王立於梓宮旁, 太平公主曰, ‘皇帝欲以此位讓叔父, 可乎?’ 幽求跪曰, ‘國家多難, 皇帝仁孝, 追蹤堯·舜, 誠合至公, 相王代之任重, 慈愛尤厚矣.’ 乃以少帝制傳位相王. 時少帝猶在御座, 太平公主進曰, ‘天下之心已歸相王, 此非兒座!’ 遂提下之”(6649쪽).

에게 [산관] 1계를 더하였고 상왕부 관리에게 2계를 더하였다.<sup>17)</sup> 流人 중 長流·長任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모두 방환하였다.<sup>18)</sup> 王承晔 이하 1천여 명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어 爵秩을 내렸다. 소제를 濫王에 봉하였다. 이날 상서로운 구름[景雲]이 출현하였다.

을사일(25일) 중서령 중소경이 戶部尚書·越國公, 실봉 500호가 되었다.<sup>19)</sup> 중서사인 유유구가 尚書左丞·徐國公, 실봉 500호가 되었다. 모두 知政事는 이전과 같았다. 좌위대장군·송왕 이성기가 太子太師·雍州牧·揚州大都督에 임명되었고 실봉 200호를 더하였다.<sup>20)</sup> 궁인 가운데 근래 백성의 자녀를 취하여 입궁시킨 자들을 그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병오일(26일) 太常少卿 薛稷을 새로 제수하여 黃門侍郎·參知機務에 임명하였다. 정미일(27일) 許州刺史·梁縣侯 姚元之가 병부상서·동중서문 하삼품, 병부상서 위사립이 중서령에 임명되었다. 武三思·武崇訓의 관작을 追削하였다. 무신일(28일) 蕭至忠·韋嗣立·趙彥昭·崔湜에게 모두 자사를 그만두게 하였다.<sup>21)</sup> 형양왕 이성의가 申王, 파릉왕 이용범이

17) 『전당문』 권253, 蘇頌4, 「睿宗受禪制」, 2557쪽. 『책부원구』 권84, 帝王部84, 赦宥3, “睿宗以唐隆元年六月甲辰即位, 大赦天下. 自唐隆元年六月二十四日辰時已前大辟罪已下咸赦除之. 內外官三品已上各加爵一等, 四品已下各加一階. 內外職事官五品已上各舉所知一人. 諸道征鎮人家令州縣檢校”(932쪽).

18)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6월 조, “長流·長任及流人未達者還之”(116쪽). 長流·長任에 대해서는 김진, 「唐代 流刑制度의 活用과 變容」, 『동양사학연구』 128, 2014, 175~184쪽 참조.

19)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以鍾紹京爲中書令. 鍾紹京少爲司農錄事, 既典朝政, 縱情賞罰, 衆皆惡之. 太常少卿薛稷勸其上表禮讓, 紹京從之. 稷入言於上曰, ‘紹京雖有勳勞, 素無才德, 出自胥徒, 一旦超居元宰, 恐失聖朝具瞻之美.’ 上以爲然. 丙午, 改除戶部尚書, 尋出爲蜀州刺史”(6649~6650쪽).

20) 『당대조령집』 권35, 諸王·除親王官上, 「宋王成器太子太師制」, 151쪽.

21)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戊申(28일), 以宋王成器爲雍州牧·揚州大都督·太子太師. …… 以太常少卿薛稷爲黃門侍郎, 參知機務. 稷以工書, 事上於藩邸, 其子伯陽尚仙源公主, 故爲相. 追削武三思·武崇訓爵諡, 斷棺暴屍, 平其

岐王, 팽성왕 이용업이 薛王에 봉해졌다. 기유일(29일) 鎮國太平公주에  
게 실봉 500호를 더하여 이전을 통틀어 1만 호가 되었다.<sup>22)</sup>

가을 7월 계축일(4일) 兵部侍郎·兼知雍州長史 崔日用이 황문시랑·  
참지기무에 임명되었다. 병진일(7일) 則天大聖皇后를 이전의 칭호대로  
天后라 하였다.<sup>23)</sup> 雍王 [李]賢을 章懷太子, 庶人 [李]重俊을 節愍太子로  
追諡하였다. 敬暉·桓彥範·崔玄暉·張柬之·袁恕己·成王 [李]千里·  
李多祚 등의 관작을 회복시켰다.<sup>24)</sup> 정사일(8일) 河南·洛陽·華州는 모  
두 이전의 명칭대로 하였다. 洛州長史 宋璟을 검교이부상서·동중서문  
하삼품, 中書侍郎 岑羲를 右散騎常侍에 임명하였다.<sup>25)</sup> 임술일(13일) 소  
지충을 晉州刺史, 위사립을 許州刺史, 조언소를 宋州刺史로 삼았다. 병  
부상서 요원지를 兼太子右庶子, 이부상서 송경을 兼太子左庶子에 임명  
하였다.<sup>26)</sup> 계해일(14일) 이부시랑 최식이 상서우승에 임명되었고, 지정  
사는 파하였다.<sup>27)</sup> 갑자일(15일) 右僕射·許國公 蘇瓌, 兵部尚書 姚元之,  
吏部尚書 宋璟, 右[散騎]常侍·判刑部尚書 岑羲가 모두 [禮儀]使에 충임

---

墳墓, 以許州刺史姚元之爲兵部尚書·同中書門下三品, 宋州刺史韋嗣立·許州刺  
史蕭至忠爲中書令, 絳州刺史趙彥昭爲中書侍郎, 華州刺史崔湜爲吏部侍郎, 並同  
平章事”(6650~6651쪽).

- 22) 『당대조령집』 권33, 諸王·封建, 「封申王成義等制」, 134쪽 및 同 권42, 公主·加  
實封, 「太平公主加實封制」, 204쪽.
- 23)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6월 조, “丁未(27일), …… 復則天大聖皇后號  
曰天后”(116쪽).
- 24) 『전당문』 권18,睿宗皇帝1, 「成王千里還舊官制」, 213~214쪽; 同, 「贈太子重俊諡  
節愍制」, 214쪽; 同, 「追贈張柬之中書令制」, 215~216쪽; 同, 「追復李多祚官制」,  
216쪽.
- 25)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7월 조, “以洛州長史宋璟檢校吏部尚書·同中書門  
下三品, 岑羲罷爲右散騎常侍·兼刑部尚書”(6652쪽).
- 26) 『전당문』 권252, 蘇頌3, 「授姚元之等兼太子庶子制」, 2547~2548쪽.
- 27)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7월 조, “貶蕭至忠爲晉州刺史, 韋嗣立許州刺  
史, 趙彥昭宋州刺史, 張錫絳州刺史, 崔湜罷”(117쪽).



되어 定陵을 冊하였다(?). 병인일(17일) 요원지가 겸중서령에 임명되었다. 정묘일(18일) 소기가 尚書左僕射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동중서문하삼품은 이전과 같았다.<sup>28)</sup> 宋國公 唐休璟이 致仕하였다. 右武衛大將軍·攝右御史大夫·同中書門下三品·韓國公 張仁奐이 右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sup>29)</sup> 무진일(19일) 최일용이 옹주장사, 설직이 우산기상시에 임명되었고 모두 知機務를 정지시켰다.<sup>30)</sup> 特進·同中書門下三品·趙國公 李嶠가 懷州刺史에 임명되었다. 司田參軍을 폐지하였다.

기사일(20일) 평왕을 황태자에 책립하였다.<sup>31)</sup>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景雲으로 개원하였다. 내외관 9품 이상 및 부친의 후사가 된 아들에게 각각 훈 1전을 더하였고, [중중] 신룡 연간(705~707) 이래로 직간하다가 원통하게 비명을 당한 자는 모두 무덤의 [봉분을] 쌓게 하였다.<sup>32)</sup> 천하 주

28) 『전당문』 권18, 睿宗皇帝1, 「授蘇瓌左僕射制」, 215쪽.

29)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7월 조, “丙寅(17일), 貶李嶠爲懷州刺史, 姚元之兼中書令, 蘇瓌爲尚書左僕射. 丁卯(18일), 唐休璟·張仁奐”(117쪽).

30)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7월 조, “黃門侍郎·參知機務崔日用與中書侍郎·參知機務薛稷爭於上前, 稷曰, ‘日用傾側, 屬附武三思, 非忠臣. 賣友邀功, 非義士.’ 日用曰, ‘臣往雖有過, 今立大功. 立大功, 謂誅韋氏之謀, 日用發之. 稷外託國姻, 謂稷子伯陽尚主. 內附張易之·宗楚客, 非傾側而何!’ 上由是兩罷之, 戊辰, 以日用爲雍州長史, 稷爲左散騎常侍”(6652쪽).

31) 『당대조령집』 권28, 皇太子·冊文, 「冊平王爲皇太子文」, 98쪽.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6월 조, “上將立太子, 以宋王成器嫡長, 而平王隆基有大功, 疑不能決. 成器辭曰, ‘國家安則先嫡長, 國家危則先有功, 苟違其宜, 四海失望. 臣死不敢居平王之上.’ 涕泣固請者累日. 大臣亦多言平王功大宜立, 劉幽求曰, ‘臣聞除天下之禍者, 當享天下之福. 平王拯社稷之危, 救君親之難, 論功莫大, 語德最賢, 無可疑者.’ 上從之. 丁未(27일), 立平王隆基爲太子. 『考異』曰, …… 睿宗錄及舊紀皆云 ‘丙午, 立太子’. 今從『太上皇錄.』隆基復表讓成器, 不許”(6650쪽).

32) 『책부원구』 권84, 帝王部84, 赦宥3, “景雲元年七月七(二十?)日, 平王爲皇太子, 大赦天下. 制曰, ‘…… 宜申沔雷之澤, 仍紀景雲之瑞. 可大赦天下, 改唐隆元年爲景雲元年. 自七月二十日昧爽以前大辟罪已下咸赦除之, 其犯十惡常赦所不免者不在赦限. 內外文武官九品已上子爲父後者賜勳一轉. 公卿各舉孝友忠正堪任東宮官一人. 自神龍以來直諫枉遭非命, 咸令封植其墓’”(932쪽).

현의 명목 가운데 [무측천] 천수 연간(690~692) 이래로 ‘武’자로 개칭된 것은 모두 옛 명칭을 회복하게 하였다. 武氏 崇恩廟를 철폐하고 그 昊陵·順陵은 모두 능의 명호를 없앴다.

경운 원년(710) 7월 기사일(20일) 제서를 내려 지금부터 左右僕射·侍中·中書令·六尚書 이상의 관직에 제수되는 자는 사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나머지는 사양할 수 없도록 하였다.<sup>33)</sup> [을해일(26일)] 황후 위씨를 追廢하여 庶人으로 삼고 安樂公主를 [追廢하여] 悖逆庶人으로 삼았다.<sup>34)</sup> 정축일(28일) 太史監을 太史局으로 개편하고 祕書省에 예속시켰다.

8월 계사일(15일) 새로 集州刺史에 제수된 초왕 이증복이 東都에 잠입하여 반역[構逆]을 일으키자 주현에서 토벌하여 평정하였다.<sup>35)</sup> 이에 앞서 종종 시기에 관작이 남발되어 妃·主의 墨勅에 의해 관직에 제수된 자들을 斜封[官]이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파면하게 하였다.<sup>36)</sup> 계묘일(25일) 門下坊을 左春坊, 典書坊을 右春坊으로 개칭하고 左右羽林衛는 이전처럼 左右羽林軍으로 개칭하였다.

9월 경술일(2일) 황태자의 아들인 [李]嗣直을 許昌郡王, [李]嗣謙을 眞定郡王에 봉하였다.

겨울 10월 갑신일(7일) 조서를 내려 孝敬皇帝의 신주를 앞서 太廟에

33) 『唐會要』 권26, 冊讓, “至景雲九(元?)年八月十四日勅, ‘左右丞相·侍中·中書令·六尚書已上, 欲讓者聽, 餘並不頒’”(上海古籍出版社, 569쪽).

34)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7월 조, “乙亥(26일), 廢崇恩廟·昊陵·順陵, 追廢皇后韋氏爲庶人, 安樂公主爲悖逆庶人”(117쪽).

35)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8월 조, “庚寅(12일), 譙王重福及汴州刺史鄭愔反, 伏誅”(117쪽). 자세한 내용은 『자치통감』 권209, 경운 원년 7~8월 조, 6653~6655쪽 참조.

36) 『자치통감』 권210, 경운 원년 8월 조, “姚元之·宋璟及御史大夫畢構上言, ‘先朝斜封官悉宜停廢, 上從之. 癸巳, 罷斜封官凡數千人’”(6655쪽).

합사하였으나 古義에 어긋남이 있어 동도에 별도로 義宗廟를 세우게 하였다.<sup>37)</sup> 정미일(30일) 요원지가 중서령·검검교병부상서에 임명되었다.<sup>38)</sup>

11월 기유일(2일) 孝和皇帝(즉 중종)를 정릉에 장사지냈다.<sup>39)</sup> 신해일(4일) 태자태사·송왕 이성기가 상서좌복야에 임명되었다. 소귀가 太子少傅에 임명되었고 侍中·鄴國公 위안석이 太子少保에 임명되고 郇國公으로 고쳐 봉해졌는데, 지정사는 모두 파하였다.<sup>40)</sup> 무진일(21일) 송왕 이성기가 司徒에 임명되었고 揚州大都督을 兼領하였다.<sup>41)</sup> 경오일(23일) 태자소부 소귀가 흥거하였다.

이 해에 위서인과 패역서인은 모두 예를 갖추어 改葬하였으나 무삼사 부자는 剖棺斬屍하였다.

[경운] 2년(711) 봄 정월 정미삭 山陵日<sup>42)</sup>이 가까워 朝賀를 받지 않았

37)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8월 조, “癸卯(26일), 出義宗於太廟”(117쪽); 『자치통감』 권210, 경운 원년 10월 조, “禮儀使姚元之·宋璟奏, [胡三省注: 唐世凡有國恤, 皆以宰相爲禮儀使, 掌山陵·祔廟等事] ‘大行皇帝神主, 應祔太廟, 請遷義宗神主於東都, 別立廟.’ 從之”(666쪽).

38)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11월 조, “戊申[朔], 姚元之爲中書令”(117쪽).

39) 『자치통감』 권210, 경운 원년 11월 조, “葬孝和皇帝於定陵, 廟號中宗, 朝議以韋后有罪, 不應祔葬. 追諡故英王妃趙氏曰和思順聖皇后, 求其瘞, 莫有知者, 乃以禕衣招魂, 覆以夷衾, 祔葬定陵”(6658쪽).

40)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11월 조, “壬子(5일), 蘇瓌·韋安石罷. 宋王成器爲尚書左僕射”(117쪽).

41)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원년 11월 조, “己巳(22일), 宋王成器爲司徒”(117쪽).

42) 『唐律疏議』 권1, 名例律6, ‘十惡’ 조, “二曰謀大逆. 謂謀毀宗廟·山陵及宮闕, … [疏]議曰, ‘…… 山陵者, 古先帝王因山而葬, 黃帝葬橋山卽其事也. 或雲, 帝王之葬, 如山如陵, 故曰山陵. …… ’”(中華書局, 7쪽). ‘山陵’은 황제의 능묘를 말하는데, 여기서 산릉일이란 중종을 정릉에 장사지낸 날을 말한다. 전국시대 이후에 능묘는 대부분 평지에 흙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지만, 당대에는 태종의 소릉

다. 계축일(7일) 泉州를 閩州로 개편하여 도독부를 설치하였고, 武榮州를 泉州로 개편하였다. 突厥의 默啜이 사신을 보내 和親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기미일(13일) 太僕卿 郭元振, 中書侍郎 張說이 모두 동중서문 하평장사가 되었다. 갑자일(18일) 溫王 李重茂를 고쳐 襄王에 봉하고 集州로 옮겼다.<sup>43)</sup> 을축일(19일) 皇后 劉氏를 肅明皇后로 추존하고 墓를 惠陵이라 하였다. 德妃 竇氏를 昭成皇后로 추존하고 墓를 靖陵이라 하였다.<sup>44)</sup>

2월 정축일(2일) 황태자에게 監國하게 하였다.<sup>45)</sup> 갑진(신?)일(9일) 요원지가 申州刺史로 좌천[左授]되었고 송경이 楚州刺史로 좌천되었다.<sup>46)</sup> 韋安石이 시중에 임명되었다. 병술일(11일) 유유구가 호부상서에 임명되었고 知政事는 파하였다.<sup>47)</sup> 무자일(13일) 조서를 내려 중종 시기의 斜封

---

이후 봉분을 쌓지 않고 산중턱에 묘혈을 뚫어서 만들었다. 중국 능침 제도에 관해서는 楊寬, 『중국역대 陵寢제도』(장인성·임대희 옮김), 서경, 2005 참조.

- 43) 『자치통감』 권210, 예종 경운 2년(711) 정월 조, “以溫王重茂爲襄王, 充集州刺史, 遣中郎將將兵五百就防之”(6661쪽).
- 44)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정월 조, “追立妃劉氏曰肅明皇后, 陵曰惠陵, 德妃竇氏曰昭成皇后, 陵曰靖陵. 皆招魂葬於東都城南, 立廟京師, 號儀坤廟. [胡三省注: 『會要』, ‘儀坤廟在親仁里’] 竇氏, 太子之母也”(6661~6662쪽).
- 45) 『당대조령집』 권30, 皇太子·監國, 『睿宗命皇太子監國制』, 112쪽.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2월 조, “命太子監國, 六品以下除官及徒罪以下, 並取太子處分”(6663쪽). 참고로 황태자 이용기의 감국 시기 문서로는 『景雲二年張君義告身』이 전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大庭修, 『唐告身の古文書學的研究』, 『唐告身と日本古代の位階制』, 皇學館出版部, 2003, 176~184쪽 참조.
- 46)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2월 조, “殿中侍御史崔蒞·太子中允薛昭素言於上曰, ‘斜封官皆先帝所除, 恩命已布, 姚元之等建議, 一朝盡奪之, 彰先帝之過, 爲陛下招怨. ……’ 太平公主亦言之, 上以爲然. 戊寅(3일), 制, ‘諸緣斜封別教授官, 先停任者, 並量材絀用.’ 太平公主聞姚元之·宋璟之謀, 大怒, 以讓太子. 太子懼, 奏元之·璟離間姑·兄, 請從極法. 甲申(9일), 貶元之爲申州刺史, 璟爲楚州刺史”(6663쪽).
- 47)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2월 조, “丙戌, …… 中書舍人·參知機務劉幽求罷爲戶部尚書, 以太子少保韋安石爲侍中. 安石與李日知代姚·宋爲政, 自是綱紀紊

官은 모두 이전대로 하도록 하였다. 경신일(?) 다시 太子左右諭德·太子左右贊善을 설치하고 각각 2員을 두었다. 무술일(23일) 관원진이 병부상서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동중서문하평장사는 이전과 같았다. 기미일(?) 修文館을 昭文館으로 개칭하였다.<sup>48)</sup> 황문시랑 이일지가 좌대어사대부에 임명되었고 동중서문하삼품은 이전과 같았다.

여름 4월 경진일(5일) 장열이 병부시랑에 임명되었고 동중서문하평장사는 이전과 같았다. 계미일(8일) 瀛州를 나누어 鄭州를 설치하였다. 조서를 내려 말하길, ‘불교와 도교는 이치는 균등하고 행적만 다를 뿐이다. 백성을 구제하고 풍속을 교화시키는 데에 있어 교리는 달라도 공능은 동일하다. 지금부터 法事集會 때마다 僧尼·道士·女冠 등은 마땅히 동등하게 시행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라.’<sup>49)</sup>라고 하였다. 갑신일(9일) 위안석이 중서령에 임명되었다. 송왕 이성기가 太子賓客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이전처럼 양주대도독을 遙領하였다.<sup>50)</sup> 병신일(21일) 이일지가 시중에 임명되었다.<sup>51)</sup>

임인일(27일)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이중복의 도당을 석방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었다[放雪]. 경관 4품 이하는 [산관] 1계를 더하였고 외관은

亂, 復如景龍之世矣”(6664쪽).

48) 『唐六典』 권8, 門下省, 弘文館 조, “神龍元年, 避孝敬皇帝諱, 改爲昭文. 神龍二年又改爲修文, 景雲二年改爲昭文. 開元七年又改爲弘文, 隸門下省”(中華書局, 254쪽); 『당회요』 권64, 史觀下, 弘文館, “[景雲]二年三月八日, 復改爲昭文館”(1317쪽).

49) 『당대조령집』 권113, 政事·道釋, 「僧道齊行並進制」, “朕聞釋及玄宗, 理均跡異, 拯人救俗, 教別功齊. 豈有於其中間, 妄生彼我, 不遵善下之旨, 相高無上之法. 有殊聖教, 頗失道源. 自今每緣法事集會, 僧尼道士女冠等, 宜齊行並進”(587쪽). 『책부원구』, 『전당문』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조서의 해석은 『당대조령집』 등에 의거하였다.

50)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4월 조, “宋王成器讓司徒, 許之, 以爲太子賓客. 以韋安石爲中書令”(6664쪽).

51)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4월 조, “辛卯(16일), 以李日知守侍中”(6665쪽).

훈 1전을 내렸으며, 3품 이상에게는 각각 작 1급을 내렸다. 천하에 남발된 도첩으로 승니·도사·여관이 된 자들을 모두 이전대로 하게 하였다.<sup>52)</sup> 또한 내외관에게 상원 원년(674)의 [故事에 따라] 9품 이상 [1품 이하] 문무관(문관?)은 모두 手巾·算袋을 패용(帶)하게 하고 무관은 모두 七事鞬鞞<sup>53)</sup>을 전부 갖추어 패용하게 하였다. 그 腰帶는 1품에서 5품까지 모두 금을 사용하고 6품·7품은 모두 은을 사용하고 8품·9품은 모두 황동[鎗石]을 사용하게 하였다. 魚袋는 자색의 [관복을] 착용한 자는 金裝하고 비색의 [관복을] 착용한 자는 銀裝하게 하였다.<sup>54)</sup> 경룡 3년(709) 이전의 체납된 조세[逋懸]는 모두 면제[放免]하였다. 천하에 5일간 大酺를 내렸다.

5월 경술일(6일) [제서를 내려] 武氏의 旣陵·順陵을 복구시키고 아울러 헤아려 官屬을 설치하였는데, 태평공주가 武攸暨를 위해 청한 것이

52) 『책부원구』 권84, 帝王部84, 赦宥3, “[景雲]二年四月壬寅, 大赦天下. 繫囚見徒流移未達前所及已到流所者皆赦免之. 京官四品以下加一階, 外官賜勳一轉, 三品以上各賜一爵. 天下濫度僧尼道士女冠等, 先經度者並令依舊, 諸州廢寺觀并依舊名置立”(932쪽).

53) 즉 鞬鞞이다. 『集韻』「帖韻」에는 “鞬, 鞬鞞, 帶具”라고 하는데, 즉 ‘七事鞬鞞’이란 요대에 패용하는 일곱 가지 물품을 말한다. 『구당서』 권45, 輿服志에는 “武官五品已上佩鞬鞞七事, 七謂佩刀·刀子·礪石·契苾真·噉厥·針筒·火石袋等也”(1953쪽)라고 하여 ‘七事鞬鞞’의 물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原田淑人, 『シナ唐代の服飾』, 『唐代の服飾』, 東洋文庫, 1970, 69~70쪽 참조. 아울러 『당률소의』 권16, 擅興律7, ‘乏軍興’ 조에도 “不憂軍事者, 杖一百. [疏]議曰, 謂隨身七事及火幕·行具細小之物, 臨軍征討, 有所闕乏, 一事不充, 卽杖一百”(306쪽)라고 하여, ‘隨身七事’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 역시 상술한 ‘七事鞬鞞’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島田正郎 譯, 『譯註日本律令』7(『唐律疏議譯註篇 3』), 東京堂出版, 1987, 25쪽 참조.

54) 『책부원구』 권60, 帝王部60, 立制度, “睿宗景雲二年四月制, 九品以上一品已下文官, 依上元故事, 帶手巾·算袋. 武官咸帶七事鞬鞞並足. 其腰帶, 一品已下五品已上並用金, 六品·七品並用銀, 八品·九品共用鎗石. 魚袋, 著紫者金裝, 著緋者銀裝”(636쪽).

다.<sup>55)</sup> 경신일(16일) 위안석에게 開府儀同三司를 더하였다. 신축(유?)일(17일) 西城公主를 金仙公主, 昌隆公主를 玉眞公主로 고치고 이어서 金仙觀·玉眞觀을 설치하였다.<sup>56)</sup> 임술일(18일) 殿中監 竇懷貞이 좌대어사대부·동중서문하평장사에 임명되었다.

6월 임오일(8일) 漢代의 故事에 따라 24都督府를 나누어 설치하였다.

윤6월 처음으로 10道按察使를 설치하였다.

가을 7월 도독부의 신설을 모두 정지시켰다. 오직 雍·洛州 長史 및 揚·益·荊·并州 4大都督府 長史의 품계는 3품으로 하였다.<sup>57)</sup>

8월 을묘일(13일) 조서를 내려 興聖寺는 고조의 옛 저택으로 감나무가 있었는데 천수 연간(690~692)에 枯死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다시 살

55)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5월 조, 6665쪽.

56)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5월 조, “辛酉, 更以西城爲金仙公主, 隆昌爲玉眞公主, 各爲之造觀, [胡三省注: 金仙·玉眞二觀皆造於京城內輔興坊. 玉眞觀, 本竇誕舊宅, 與金仙觀相對.] 逼奪民居甚多, 用功數百萬. 右散騎常侍魏知古·黃門侍郎李义諫, 不聽”(6665쪽).

57)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6월 조, “時遣使按察十道, [胡三省注: 太宗貞觀十八年, 遣十七道巡察, 武后垂拱初, 亦嘗遣九道巡察, 天授二年又遣十道存撫使, 至是分爲十道按察使, 以廉按州郡, 二周年一替.] 議者以山南所部闊遠, 乃分爲東西道. 又分隴右爲河西道. 六月, 壬午, 又分天下置汴…… 潭二十四都督, 各糾察所部刺史以下善惡, 惟洛及近畿州不隸都督府. 太子右庶子李景伯·舍人盧備等上言, ‘都督專殺生之柄, 權任太重, 或用非其人, 爲害不細. 今御史秩卑望重, 以時巡察, 姦宄自禁.’ 其後竟罷都督, 但置十道按察使而已”(6666쪽); 『당회요』 권68, 都督府, “景雲二年六月二十八日制, 勅天下分置都督府二十四, 令都督糾察所管州刺史以下官人善惡, …… 其揚·益·并·荊爲大都督府, 長史正三品. 其雍·洛州長史, 亦加至從三品. …… 改錄事參軍爲司舉從事, 令糾察管內官人, 每府置兩員, 並同京官, 資望比侍御史, 若糾不以實, 姦不能禁者, 令左右御史臺彈奏, 畿內州並不隸入都督府. 其年七月, 詔置都督, 議者以爲權重難制, 所授多非精選, 請罷之, 詔令九品已上議其事, 侍御史宋務光議曰, ‘……’, 太子右庶子李景伯·中書舍人盧補等議曰, ‘……’, 吏部員外郎崔沘議曰, ‘……’”(1411~1416쪽). 관련 연구로는 임대희, 『唐 開元年間의 右御史臺와 諸道按察使』, 『역사학보』 138, 1993 등 참조.

아났다고 하므로 천하에 大赦를 내렸다. 다만 謀殺<sup>58)</sup> · 劫殺<sup>59)</sup> · 造<sup>偽</sup><sup>60)</sup>한 頭首<sup>61)</sup>는 모두 사형을 감면하여 嶺南으로 유배[配流]하였고, 官典이 장

58) 『당률소의』 권17, 賊盜律9, ‘謀殺人’ 조, “諸謀殺人者, 徒三年, 已傷者, 絞, 已殺者, 斬. 從而加功者, 絞, 不加功者, 流三千裏. 造意者, 雖不行仍爲首. [疏]議曰, ‘謂二人以上, 若事已彰露, 欲殺不虛, 雖獨一人, 亦同二人謀法, 徒三年’”(329쪽). 즉 謀殺은 살인의 예비 · 음모를 말한다(中村茂夫 譯, 『譯註日本律令』 7, 97~98쪽). 이때 謀에 대하여 『晉書』 권30, 刑法志에는 “二人對議, 謂之謀”(928쪽)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모의가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다만 범행의 의도나 동기가 분명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범행의 착수라고 인정될 만한 행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1인이더라도 謀라고 인정되었는데, 후자의 의미까지 포함한다면 謀란 예비 · 음모를 말한다(滋賀秀三 譯, 『譯註日本律令』 5(唐律疏議譯註篇 1), 東京堂出版, 1979, 330쪽). 자세한 사항은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원칙』, 아카넷, 2004, 429~430쪽 참조.

59) 당률에는 謀殺 · 故殺 · 鬪殺 · 戲殺 · 誤殺 · 過失殺의 6가지 살인죄의 개념이 있지만, ‘劫殺’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대 이후 劫殺은 당률의 謀殺 · 故殺 등과 함께 ‘七殺’이라고 불렀는데, (元) 除元瑞, 『史學指南』, ‘七殺’에는 “謀, 二人對議. 故, 知而犯之. 劫, 威力強取. 鬪, 兩怒相犯. 誤, 出於非意. 戲, 兩和相害. 過失, 不意誤犯”(楊訥 點校, 『史學指南』(外三種), 浙江古籍出版社, 60쪽)라고 한다(奧村鬱三 譯, 『譯註日本律令』 7, 360~361쪽). 즉 위력에 의한 강도 살인을 말한다.

60) 즉 ‘偽造’이다. 『당률소의』 권25, 詐僞律1, ‘偽造御寶’에는 “諸偽造皇帝八寶者, 斬. 太皇太后 · 皇太后 · 皇后 · 皇太子寶者, 絞. 皇太子妃寶, 流二千里”(452쪽)라고 하는데, ‘偽造’란 寶의 僞作을 말한다. 반면 詐僞律2, 詐僞律3에 의하면, 官文書印과 符節의 僞作에는 ‘偽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林紀昭 譯, 『譯註日本律令』 8(唐律疏議譯註篇 4), 東京堂出版, 1996, 11~12쪽). 관련 내용은 佐竹昭, 『古代王權と恩赦』, 108~110쪽 참조.

61) 『당률소의』 권18, 賊盜律18, ‘殺人移鄉’ 조, “若群黨共殺, 止移下手者及頭首之人”(342쪽). 여기서 ‘頭首’는 造意 · 元謀者를 말한다(中村茂夫 譯, 『譯註日本律令』 7, 136쪽). 이때 ‘造意’에 대하여 『진서』 권30, 형법지에는 “唱首先言, 謂之造意”(928쪽)라고 정의하고 있고, 『당률소의』 권5, 名例律42, ‘共犯罪造意爲首’ 조에도 “諸共犯罪者, 以造意爲首, 隨從者減一等. 若家人共犯, 止坐尊長”(115쪽)라고 하는데, 즉 범죄를 수행하려고 하는 공동 의지의 형성 및 지속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元謀’ 역시 본질적으로는 ‘造意’와 동일한 사정을 말한다(滋賀秀三 譯, 『譯註日本律令』 5, 251~253쪽). 자세한 사항은 김택민, 『동



물을 받은[官典受贓]<sup>62)</sup> 경우는 특별히 放免하도록 하였다. 천하에 3일간 大酺을 내렸다. 정사일(15일) [조서를 내려] 황태자에게 太學에서 釋奠<sup>63)</sup>을 행하게 하였다.<sup>64)</sup> 기사일(27일) 위안석이 尚書右僕射·同中書門下三品·兼太子賓客, 禮部尚書 竇希玠가 太子少傅에 임명되었다.<sup>65)</sup> 경오일(28일) 左右屯衛를 左右威衛, 左右宗衛率府를 左右司御府, 渾儀監을 太史監으로 개칭하였다.

9월 정묘일(?) 두회정이 시중에 임명되었다.<sup>66)</sup>

겨울 10월 갑진일(3일) 吏部尚書 劉幽求가 侍中, 散騎常侍 魏知古가 同中書門下三品, 太子詹事 崔湜이 中書侍郎·同中書門下三品, 中書侍郎

양법의 일반원칙』, 481~484쪽 참조.

62) '官典犯贓'이라고도 하는데, 唐律에는 보이지 않는 말이다. 협의의 官人에 그치지 않고 役人 일반의 贓罪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관련 내용은 佐竹昭, 『古代王權と恩赦』, 110~112쪽 참조.

63) '先聖先師'에 대한 제사의 특별한 명칭이다. 즉 『당육전』 권4, 尚書禮部, 祠部郎中·員外郎 조에는 “凡祭祀之名有四, 一曰祀天神, 二曰祭地祇, 三曰享人鬼, 四曰釋奠於先聖先師”(120쪽)라고 하고, 또 同 권4, 상서에부, 禮部郎中·員外郎 조에는 “三十一日皇太子釋奠, 三十二日國學釋奠, 三十三日釋奠於齊太公, 三十四日諸州釋奠, 三十五日諸縣釋奠”(111쪽)라고 하여 吉禮 55종을 열거하면서 다섯 가지의 釋奠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皇太子釋奠의 경우에는 齋戒-陳設-出宮-饋享-講學-還宮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자세한 절차는 『大唐開元禮』 권53, 皇太子釋奠於孔宣父, 民族出版社, 292~298쪽 참조. 아울러 관련 연구로는 中野昌代, 『唐代の釋奠について』, 『史窓』 58, 2001 등 참조.

64) 『당대조령집』 권29, 皇太子·齒胄, 『皇太子國子監釋奠詔』, 108쪽.

65)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8월 조, “庚午(28일), 以中書令韋安石爲左僕射兼太子賓客·同中書門下三品. 太平公主以安石不附己, 故崇以虛名, 實去其權也”(6666~6667쪽).

66) 『신당서』 권5, 예종본기, 경운 2년 9월 조, “乙亥(3일), 竇懷貞爲侍中”(118쪽);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9월 조, “庚辰(8일), 以竇懷貞爲侍中. 懷貞每退朝, 必詣太平公主第, 時脩金仙·玉眞二觀, 羣臣多諫, 懷貞獨勸成之, 身自督役. 時人謂懷貞前爲皇后阿瞞, 今爲公主邑司. [胡三省注: 唐公有邑司令·丞, 掌其主家財貨出入·田園徵封之事. 『考異』曰: …… 又懷貞以自督脩二觀之故, 時人語曰, ‘竇僕射前爲皇后國瞞, 今爲公主邑丞.’ 非眞知邑司也. 今從『舊紀』”(6667쪽).

陸象先이 同中書門下平章사가 되었다. 韋安石이 尚書左僕射·東都留守, 侍中 李日知가 戶部尚書, 兵部尚書 郭元振이 吏部尚書, 侍中·兼檢校左臺御史大夫 竇懷貞이 左臺御史大夫, 兵部侍郎·兼左庶子 張說이 尚書左丞에 임명되었는데, [모두] 知政事を 과하였다.<sup>67)</sup>

11월 무인일(8일) 太史監을 太史局으로 개편하고 이전처럼 祕書省에 예속시켰다. 王師를 [王]傳로 고쳤다.

【신라 성덕왕 10년(711) 12월 당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sup>68)</sup>

[경운] 3년(712) 봄 정월 신미삭 태묘를 친히 배알하였다. 계유일(3일) 황상이 비로소 慘服을 벗고 正殿에 거동하여 朝賀를 받았다. 갑술일(4일) 并·汾·絳 3州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가옥이 무너졌다. 신사일(11일) 南郊에서 [친히 교사를 지냈다.]<sup>69)</sup> 무자일(18일) [瀋水 동쪽에 행차하여]<sup>70)</sup> 몸소 藉田을 경작하였다. 기축일(19일)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太極

67) 『전당문』 권18, 睿宗皇帝1, 「韋安石等罷相制」, 217쪽.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10월 조, “上御承天門, 引韋安石·郭元振·竇懷貞·李日知·張說宣制, 責以政教多闕, …… 亦輔佐非才. 安石可左僕射·東都留守, 元振可吏部尚書, 懷貞可左御史大夫, 日知可戶部尚書, 說可左丞, 並罷政事.” 以吏部尚書劉幽求爲侍中, …… 皆太平公主之志也. 象先清淨寡欲, 言論高遠, 爲時人所重. 湜私侍太平公主, 公主欲引以爲相, 湜請與象先同升, 公主不可, 湜曰, ‘然則湜亦不敢當.’ 公主乃爲之並言於上, 上不欲用湜, 公主涕泣以請, 乃從之”(6667~6668쪽).

68)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0년(711) 12월 조, “十二月, 遣使入唐朝貢”(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 을유문화사, 1996, 223쪽). 관련 기록이 『책부원구』 권970, 外臣部15, 朝貢3에는 “[景雲二年]十二月, 突厥獻食, 大食·新羅·林邑·獅子國遣使獻方物, 拂菻國獻方物”(11235쪽)이라고 한다.

69) 『자치통감』 권210, 현종 선천 원년(712) 정월 조, “睿宗祀南郊, 初因諫議大夫賈會議合祭天地”(6670쪽). 또 『구당서』 권21, 禮儀志1, 832~833쪽 참조.

70)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정월 조, “幸瀋東, [胡三省注: 『水經註』, ‘霸水北歷藍田川, 又左合瀋水.’ 瀋水逕長樂城西, 是後韋堅引爲廣運潭, 在京師苑城之東, 此地又在瀋水之東.] 耕藉田”(6671쪽)

이라 개원하였다.<sup>71)</sup> 内外官 4품 이하에게는 [산관] 1계를 더하였고 3품 이상에게는 작 1급을 더하였다. 孔宣父(즉 공자)<sup>72)</sup>의 祠廟는 本州에서 부근의 30호를 취하여 청소[灑掃]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천하에 5일간 大酺를 내리고 특별히 老人 가운데 90세 이상에게는 緋衫과 牙笏을 내리고 80세 이상에게는 綠衫과 木笏을 내렸다.<sup>73)</sup> 을미일(25일) 호부상서 잠희, 좌대어사대부 두회정이 모두 동중서문하삼품에 임명되었다.

2월 정유(사?)일(18일) 秘書[省]에 少監 1員, 光祿·大理·鴻臚·太府·衛尉·宗正[寺]에 각각 少卿 1員, 少府監·將作監에 少監 1員, 國子監에 司業 1員, 左右臺에 각각 中丞 1員을 증치하였다.<sup>74)</sup> 雍·洛州, 并·益·荊·揚[州] 4大都督府에 각각 司馬 1員을 증치하고 이어서 左右司馬로 나누었다. 정해일(?) 皇太子가 國學에서 釋奠을 행하였다.<sup>75)</sup> 顏回를 太子太師, 曾參을 太子太保로 추증하였다.<sup>76)</sup> 매년 봄·가을에 석전을 행하고 四科弟子<sup>77)</sup>·曾參을 從祀하여 22賢<sup>78)</sup>의 상위에 배열하였다. 신유

71) 『구당서』 권24, 禮儀志4, “睿宗太極元年, 親祀先農, 躬耕帝藉, 禮畢, 大赦, 改元”(913쪽).

72) 『신당서』 권15, 禮樂志5, “[貞觀]十一年, 詔尊孔子爲宣父, 作廟於兗州, 給戶二十以奉之”(373쪽).

73)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정월 조, “己丑(19일), 大赦, 改元曰太極, 賜内外官階·爵, 民酺五日, 版授九以上州刺史, 八十以上上州司馬, 辛卯(21일), 幸安福門, 觀酺三日夜”(119쪽).

74) 『당회요』 권65, 秘書省, 少監 조, “太極元年二月, 加一員, 以崔琳爲之”(1327쪽); 『당회요』 권66, 少府監, 少監 조, “本一員, 太極元年二月十八日, 加一員, 以孔仲思爲之”(1366쪽); 『당회요』 권66, 東都國子監, 司業 조, “本一員, 太極元年二月十八日, 加一員, 以蕭惠爲之”(1368쪽).

75)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2월 조, “丁巳(18일), 皇太子釋奠於國學”(119쪽); 『당회요』 권35, 釋奠, “太極元年二月二十八日, 皇太子親釋奠, 開講筵, 國子司業褚無量執經”(749쪽).

76) 『당회요』 권35, 褒崇先聖, “太極元年二月十六日, 追贈顏回爲太子太師, 曾參爲太子太保, 並配享孔子廟”(744쪽).

77) ‘孔門十哲’(혹은 ‘四科十哲’)을 가리킨다. 德行·言語·政事·文學의 이른바 ‘孔

일(22일) 右御史臺의 官員을 철폐하였다. 기사일(30일) 새로운 格·式을 천하에 반포하였다.<sup>79)</sup> 【[신라 성덕왕 11년(712)] 봄 2월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80)</sup> 3월 …… 大唐에서 盧元敏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칙서를 내려 왕의 이름을 고치도록 하였다.】<sup>81)</sup>

門四科'에 특출한 공자의 제자 10명을 말한다. 즉 『論語』「先進」, “子曰, ‘從我於陳·蔡者, 皆不及門也.’ 德行, 顏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遊·子夏”(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編, 『論語注疏』 권 11, 「先進」, 北京大學出版社, 1999, 142~143쪽).

78) 先儒 22賢을 말한다. ‘十哲’과 함께 釋奠의 從祀 대상이 되었는데, 즉 『당육전』 권21, 國子監, 國子監祭酒 조에는 “凡春·秋二分之月, 上丁釋奠於先聖孔宣父, 以先師顏回配, 七十二弟子及先儒二十二賢從祀焉. [原注: 舊令唯祀十哲及二十二賢. 開元八年, 勅例曾參於十哲之次, 并七十二子並許從祀. 其名歷已具於祠部]” (557~558쪽)라고 한다. 『대당개원례』 권1, 序例上, 神位에 의하면, 左丘明·公羊高·穀梁赤·伏勝·高堂生·戴聖·毛萇·孔安國·劉向·鄭衆·杜子春·馬融·盧植·鄭玄·服虔·賈逵·何休·王肅·王弼·杜預·範甯 등이 22현으로 확인된다(16~17쪽).

79) 『전당문』 권18, 睿宗皇帝1, 「頒示格式制」, 218~219쪽. 예종 경운 원년(710) 岑羲·陸象先 등에게 명하여 格式律令을 刪定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천하에 반포한 것이다. 즉 『구당서』 권50, 刑法志에는 “景雲初, 睿宗又敕戶部尚書岑羲·中書侍郎陸象先 …… 刑部主事閻義顯凡十人, 刪定格式律令. 太極元年二月奏上, 名爲太極格”(2149~2150쪽)이라고 하고, 『당회요』 권39, 定格令에는 “至景雲元年, 勅又令刪定格令. 太極元年二月二十五日, 奏上之, 名爲太極格. 戶部尚書岑羲·中書侍郎陸象先 …… 刑部主事閻義顯等同修”(821쪽)라고 한다. 당시 실제로 편찬되었던 것은 『太極格』 뿐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영의 연혁을 기술한 『당육전』 권6, 尚書刑部, 刑部郎中·員外郎 조에 “太極初岑羲, 開元初姚元崇, 四年宋璟並刊定”(185쪽)이라고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수·당전기의 법전편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滋賀秀三, 「法典編纂の歴史」, 『中國法制史論集』(法典と刑法), 創文社, 2003, 72~88쪽 참조. 또 정병준, 「唐·五代 法典 編纂 形式의 변화와 그 성격」 『唐會要』·『五代會要』 ‘定格令’ 譯註, 『중국고중세사연구』 35, 2015도 참고.

8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1년(712) 2월 조, “春二月, 遣使入唐朝貢”(223쪽). 관련 기록이 『책부원구』 권970, 外臣部15, 朝貢3에는 “太極元年二月, 新羅·突厥並遣使朝貢”(11235쪽)이라고 한다.

8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1년(712) 3월 조, “三月, …… 大唐遣使盧元

여름 4월 신축일(3일) 제서를 내려 말하였다.

짐이 듣건대 형벌을 사용하지 아니함은 형벌의 운용에서 연유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함은 반드시 주살함에 달려있다고 한다. 엄정한 형벌과 준엄한 법은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니, 제도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 황조가 건국된 지 겨우 100년 정도임에도 천하가 화평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날에는 수말을 계승하여 법을 준수함이 자못 가혹하였지만 근래에는 안정된 시절을 이어받아 기강을 유지함이 나날이 이완되었다. 게다가 짐이 부덕하여 선조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또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져 멀리 옛날만 못하게 되었다. 짐이 황위에 오른 지 이제 3년째에 이르렀으나, 온갖 정무가 번다하여 한시도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일찍이 나부터 모범이 되면 백성들이 감응하여 교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여겼고, 악습에 미혹되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잊어버린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 위엄으로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차 순박한 풍속에 이르려면 우선 법을 중시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래 장물과 뇌물이 그치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됨에도 방종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금령을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혁파해야 승평의 시절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니, 마침내 작은 인정을 끊어내고 큰 요체를 숭상하려 한다. 지금 이후부터 造僞한 頭首는 참수형에 처하고 아울러 일가[一房]의 자재를 몰수하며 문음으로 함께 기용된 자는 모두 정직·삭탈하라. 頭首가 아닌 자는 교수형에 처하라. 만일 이전에 造僞한 자가 열흘 내에 자수하면 자진하게 하

敏, 勅改王名”(223쪽). 신라 성덕왕의 휘가 金隆基이므로 당 현종의 휘를 피휘하여 개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즉위 조에는 “聖德王立, 諱興光, 本名隆基, 與玄宗諱同, 先天中改焉”(222쪽)이라고 한다. 동일한 내용이 『당회요』 권95, 신라 조에는 “先天元年, 改名興光”(2028쪽)이라고 하고, 『구당서』 권199상, 신라전에는 “興光本名與太宗同, 先天中則天改焉”(5337쪽)라고 하는데, 다만 『구당서』 신라전의 내용은 착오이다.

라. 官典主司가 법을 어기고 장물을 받은 것[枉法受贓]<sup>82)</sup>이 1필 이상이면 장형 1백을 우선 집행하라. 장물 및 악행의 [情]狀으로 인해 해임되거나 교체된 자는 [銓]選할 때가 아니면 멋대로 京城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설령 가문의 관직[家貴]이 경성에 있더라도 멋대로 조당에 이르러 망령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지[披訴] 못하게 하라. 만일 이러한 부류가 있다면 모두 장형을 집행하고 아울러 貶斥을 더하라. 이전에 이미 경성에 있었던 자는 사흘 내에 [본적지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상하 관료가 멋대로 사사로운 정으로 인해 청탁한 경우 그 청탁을 받은 자는 마땅히 狀<sup>83)</sup>을 봉함하여 奏聞하라. 이성기 이하는 짐이 스스로 형벌을 집행할 것이다. 그 나머지 왕공 이하는 모두 현임관에서 해임하고 3~5년 동안 모름지기 齒錄하지 말라. 狀을 올린 자는 별도로 포상을 더하라. 御史에게 마땅히 諸司를 나누어 감찰하게 하라.<sup>84)</sup>

82) 당률에 규정된 장죄의 여섯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즉 『당률소의』 권4, 名例律32, ‘彼此俱罪之贓’ 조의 疏議, “受財枉法·不枉法及受所監臨財物, 并坐贓, 依法, 與財者亦各得罪. 此名彼此俱罪之贓, 謂計贓爲罪者”(86쪽). 이때 ‘贓’이란 財物의 奪取 또는 授受가 범죄를 구성할 때 탈취 또는 수수의 대상이 되었던 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贓罪의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즉 強盜·竊盜·枉法·不枉法·受所監臨·坐贓이다. 여기서 ‘坐贓’이란 枉法·不枉法·受所監臨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재물의 수수행위를 말한다(滋賀秀三譯, 『譯註日本律令』 5, 187~189쪽).

83)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공문서 형식의 하나이다. 즉 『당육전』 권1, 三師三公尙書都省, 尙書都省 조에는 “凡下之所以達上, 其制亦有六, 曰: 表·狀·牋·啓·牒·辭. [原註: 表上於天子, 其近臣亦爲狀, ……]”(11쪽)라고 한다. 또 同 권8, 門下省, 侍中 조에도 “凡下之通于上, 其制有六: 一曰奏抄, 二曰奏彈, 三曰露布, 四曰議, 五曰表, 六曰狀”(241~242쪽)라고 한다. 관련 연구로는 吳麗娛, 「試論“狀”在唐朝中央行政體系中的應用與傳遞」, 『文史』 2008-1 (鄧小南·曹家齊·平田茂樹 主編, 『文書·政令·信息溝通: 以唐宋時期爲主』, 北京大學出版社, 2011 再錄); 同, 「下情上達: 兩種“狀”的應用與唐朝的信息傳遞」, 『唐史論叢』 11, 2009; 同, 「從敦煌吐魯番文書看唐代地方機構行用的狀」, 『中華文史論叢』 98, 2010 참조.

84) 『책부원구』 권612, 刑法部4, 定律令4, 7068~7069쪽; 『진당문』 권18, 睿宗皇帝1, 「頒新格式制」, 218~219쪽에도 동일한 조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5월 무인일(10일) 친히 北郊에서 교사를 지냈다. 신미(사?)일(13일)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延和로 개원하였다. 환언범·경휘·최현위·장간지·원서기 등은 특별히 그 자손에게 實封 200호를 돌려주었다. 천하에 5일간 大酺를 내렸다.<sup>85)</sup>

6월 계축일(15일) 호부상서 잠희가 시중에 임명되었다.<sup>86)</sup> 을묘일(17일) 則天皇后를 天后聖帝로 추존하였다.<sup>87)</sup> 경신일(22일) 幽州都督 孫儉이 左驍衛將軍 李楷洛, 左威衛將軍 周以悌 등을 거느리고 군사 3만을 이끌고 奚의 首領 李大輔와 碭山에서 싸웠는데, 적에게 패배하여 손검이 전투[陳] 중에 죽었다.<sup>88)</sup> 임술일(24일) 위지고가 호부상서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동중서문하삼품은 이전과 같았다.

가을 7월 경오일(3일) 두회정이 尚書右僕射·平章軍國重事に 임명되었다.<sup>89)</sup> 기묘일(12일) 황상이 안복문에서 악무를 관람하였는데, 밤새도록 불을 밝혀 날을 지새우고서야 마침내 그쳤다.<sup>90)</sup>

85) 『당대조령집』 권73, 典禮·北郊, 『太極元年北郊赦』, 408~409쪽.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5월 조, “戊寅, 有事於北郊. 辛巳(13일), 大赦, 改元曰延和, 賜內外官陪禮者勳一轉, 民酺五日”(119쪽).

86)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6월 조, “上以節潛太子之亂, 岑羲有保護之功, [胡三省注: 節潛之難, 冉祖雍誣帝及太平與太子連謀, 賴羲與蕭至忠保護得免.] 癸丑, 以羲爲侍中”(6672쪽).

87)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6월 조, “追號大聖天后爲天后聖帝”(119쪽);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8월 조, “壬寅(5일), 上大聖天后尊號曰聖帝天后”(6674쪽).

88)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6월 조, “甲子(26일), 幽州都督孫儉·左驍衛將軍李楷洛·左威衛將軍周以悌及奚戰於冷陁山, 敗績”(119쪽);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6월 조, “庚申, 幽州大都督孫儉與奚酋李大輔戰於冷陁, 全軍覆沒. 是時, 儉帥左驍衛將軍李楷洛, 左威衛將軍周以悌發兵二萬·騎八千, 分爲三軍, 以襲奚·契丹. …… 將士懼, 無復部伍, 虜追擊之, 士卒皆潰. 儉·以悌爲虜所擒, 獻於突厥, 默啜皆殺之. 楷洛·可利脫歸”(6672~6673쪽).

89)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7월 조, “乙亥(8일), 復以懷貞爲左僕射兼御史大夫·平章軍國重事”(6673쪽).

8월 경자일(3일) 황제가 황태자에게 전위하였다.<sup>91)</sup> 太上皇帝<sup>92)</sup>를 자칭하고 5일에 한 번 太極殿에서 조회를 받았으며, 스스로를 ‘朕’이라 칭하였다. 3품 이상의 除授 및 大刑獄은 모두 스스로 처결하였고 그 처분의 문건[事]은 誥書(즉 誥書)<sup>93)</sup>이라 칭하였다. 皇帝(즉 현종)는 매일 武德殿에서 조회를 받았으며 스스로를 ‘予’라고 칭하였다. 3품 이하의 除授 및 徒罪 [이하는] 모두 [황제에게] 처결하게 하였고 그 처분의 문건은 制·勅

90)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7월 조, “幸安福門觀樂, 三日而止”(119쪽).

91) 예종의 양위과정을 둘러싼 태평공주와 황태자 이용기의 권력투쟁에 대하여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7월 조에는 “太平公主使術者言於上曰, ‘彗所以除舊布新, 又帝座及心前星皆有變, 皇太子當爲天子.’ 上曰, ‘傳德避災, 吾志決矣.’ 太平公主及其黨皆力諫, 以爲不可, …… 太子聞之, 馳入見, 自投於地, 叩頭請曰, ‘… 未審陛下遽以大位傳之, 何也?’ 上曰, ‘社稷所以再安, 吾之所以得天下, 皆汝力也. 今帝座有災, 故以授汝, 轉禍爲福, 汝何疑邪!’ 太子固辭. 上曰, ‘汝爲孝子, 何必待柩前然後即位邪!’ 太子流涕而出. 壬辰(25일), 制傳位於太子, 太子上表固辭. 太平公主勸上雖傳位, 猶宜自總大政. 上乃謂太子曰, ‘… 其軍國大事, 當兼省之’”(6673~6674쪽)라고 한다. 『당대조령집』 권30, 皇太子·傳位, 『神堯傳位皇太子詔』, 115~116쪽; 『진당문』 권40, 元宗皇帝21, 『讓禪位表』, 438쪽; 『진당문』 권18, 睿宗皇帝1, 『睿皇太子讓禪位表詔』, 221쪽 참조. 자세한 사항은 閻守誠·吳宗國, 『당현중』, 51~52쪽 참조.

92) 태상황 혹은 태상황제의 칭호는 진시황이 부친 장양왕을 추존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한고조가 자신의 부친을 예우하기 위해 생존한 부친에게 태상황의 칭호를 올리면서 생시의 칭호가 되었는데, 즉(淸) 顧炎武, 『日知錄』 권14, 太上皇에는 “『秦始皇本紀』, ‘追尊莊襄王爲太上皇’, 是死而追尊之號, 猶周曰‘太王’也. 漢則以爲生號, 而後代並因之矣”(欒保羣·呂宗力 校點, 『日知錄集釋』, 上海古籍出版社, 824~825쪽)라고 한다. 당대에 태상황을 칭한 황제는 高祖·睿宗·玄宗·順宗 총 4명인데, (宋) 洪邁, 『容齋續筆』 권11, 唐帝稱太上皇에는 “唐諸帝稱太上皇者, 高祖·睿宗·明皇·順宗凡四君. 順宗以病廢之故, 不能臨政, 高祖以秦王殺建成·元吉, 明皇幸蜀, 爲太子所奪, 唯睿宗上畏天戒, 發於誠心, 爲史冊所表”(孔凡禮 點校, 『容齋隨筆』, 中華書局, 354쪽)라고 한다.

93) 태상황 혹은 태상황제가 사용하는 임시적 왕언인 誥書를 가리킨다(中村裕一, 『唐代の誥』,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1991, 191쪽). 자세한 사항은 中村裕一, 『唐代の誥』, 『唐代制勅研究』, 174~191쪽; 中村裕一, 『誥書』, 『隋唐王言の研究』, 汲古書院, 2003, 238~247쪽 참조.



이라 칭하였다.<sup>94)</sup> 갑진일(7일)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先天으로 개원하였다.<sup>95)</sup>

8월 무신일(11일) 황제의 아들인 許昌[郡]王 [李]嗣直을 郟王, 眞定 [郡]王 [李]嗣謙을 郢王으로 고쳐 봉하였다.<sup>96)</sup> 기유일(12일) 송왕 이성기를司空으로 삼고 이전처럼 양주대도독을 遙領하게 하였다. 경술일(13일) 두회정이 상서좌복야·동중서문하삼품 및 겸어사대부에 임명되었다. 유유구가 상서우복야에 임명되었고 동중서문하삼품은 이전과 같았다. 위지고가 시중, 최식이 중서령에 임명되었고 모두 監修國史로 삼았다. 정사일(20일) 황제의 妃 王氏를 皇后로 책립하였다.<sup>97)</sup> 계해일(26일) 유유구가 封州에 유배[配流]되었다.<sup>98)</sup>

94) 예종은 태상황제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즉 『용재속필』 권11, 唐帝稱太上皇에는 “唯睿宗上畏天戒, 發於誠心, 爲史冊所表. 然以事考之, 睿宗以先天元年八月, 傳位於皇太子, 猶五日一受朝, 三品以上除授, 及大刑政皆自決之. 故皇帝之子嗣直·嗣謙·嗣昇封王, 皆以上皇誥而出命. 又遣皇帝巡邊. 二年七月甲子, 太平公主誅, 明日乙丑, 即歸政. 然則猶有不獲已也”(354쪽)라고 하는데, 이는 태평공주를 위로하고 동시에 현종과 태평공주 사이의 정치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任士英, 『황제들의 당제국사』(류준형 옮김), 푸른역사, 2016, 152쪽).

95) 『책부원구』 권80, 帝王部80, 慶賜2, “甲辰, 大赦, 改元. 內外官四品已下加一階, 三品已上賜爵一等. 天下大酺三日”(873쪽); 『책부원구』 권84, 帝王部84, 赦宥2, “先天元年八月甲辰, 傳位於皇太子, 帝稱太上皇. 大赦天下, 改元先天. 自先天元年八月七日大辟罪已下減赦除之, 其常赦不免者不在赦限”(933쪽).

96) 『전당문』 권19, 睿宗皇帝2, 「封郟王·郢王誥」, 227~228쪽.

97) 『전당문』 권19, 睿宗皇帝2, 「冊皇帝妃王氏爲皇后誥」, 227쪽.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8월 조, “丁未(10일), 立皇太子妃王氏爲皇后”(119~120쪽);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8월 조, “丙午(9일), 立妃王氏爲皇后, 以後父仁皎爲太僕卿”(6675쪽).

98)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8월 조, “戊午(21일), 流劉幽求於封州”(120쪽);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8월 조, “是時, 宰相多太平公主之黨, 劉幽求與右羽林將軍張暉謀以羽林兵誅之, 使暉密言於上曰, “竇懷貞·崔湜·岑羲皆因公主得進, 日夜爲謀不輕. 若不早圖, 一旦事起, 太上皇何以得安! 請速誅之. 臣已與

9월 정묘삭 일식이 있었다. 갑신일(18일) 황제의 아들 [李]嗣昇을 陝王에 봉하였다.<sup>99)</sup>

겨울 10월 경자일(4일) 황제가 친히 태묘를 배알하였다.<sup>100)</sup> 예를 마치자 延喜門<sup>101)</sup>에 거둥하여 천하에 大赦를 내렸다.<sup>102)</sup> 임인일(6일) 昭成皇后·肅明皇后의 神主를 儀坤廟<sup>103)</sup>에 합사[附]하였다. 계묘일(7일) 황제가 新豐[縣]의 溫湯에 행차하여 渭川에서 校獵하였다.<sup>104)</sup>

12월 정미일(12일) 誥[書]를 내려 백성들이 개와 닭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sup>105)</sup> 무오일(23일) 箕州를 儀州로 개칭하였다.

幽求定計，惟俟陛下之命.’ 上深以爲然，嗔洩其謀於侍御史鄧光賓，上大懼，遽列上其狀。丙辰(19일)，幽求下獄。有司奏，‘幽求等離間骨肉，罪當死.’ 上爲言幽求有大功，不可殺。癸亥(26일)，流幽求於封州，張暉於峯州，光賓於繡州”(6676~6677쪽).

99) 『전당문』 권19, 睿宗皇帝2, 「封陝王誥」, 228쪽, 『신당서』 권5, 예종본기, 선천 원년 9월 조, “甲午(28일), 封皇帝子嗣昇爲陝王”(120쪽);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9월 조, “辛卯(25일), 立皇子嗣昇爲陝王. 『考異』曰: 『睿宗實錄』作‘甲申’, 『太上皇錄』作‘甲午’. 今從『玄宗實錄』. 嗣昇母楊氏, 士達之曾孫也. 王后無子, 母養之”(6677쪽).

100) 『당대조령집』 권75, 典禮·親享, 「令皇帝親謁太廟誥」, 425~426쪽.

101) 장안의 황성 동쪽에 위치한 문이다. 『당양경성방고』 권1, 西京, 皇城 조, “東面二門, 南曰景風門, 北曰延喜門. [直東當外郭之通化門]”(9~10쪽).

102) 『당대조령집』 권75, 典禮·親享, 「明皇卽位謁太廟赦」, 426쪽; 『전당문』 권20, 元宗皇帝1, 「受禪制」, 235쪽.

103) 예종 경운 2년(711) 정월 京師에 건립된 肅明皇后 劉氏와 昭成皇后 竇氏의 사당이다. 즉 『자치통감』 권210, 경운 2년 정월 조에는 “乙丑, 追立妃劉氏曰肅明皇后, 陵曰惠陵, 德妃竇氏曰昭成皇后, 陵曰靖陵. 皆招魂葬於東都城南, 立廟京師, 號儀坤廟.”(6661~6662쪽)라고 한다. 아울러 『당회요』 권19, 儀坤廟, 440~441쪽 참조.

104)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10월 조, “上幸新豐, 獵於驪山之下”(6677쪽).

105) 『전당문』 권26, 元宗皇帝7, 「禁屠殺鷄犬詔」, “犬以守禦, 雞以司晨, 有用於人, 不同常畜. 好生之德, 徧宜令及. 自今並不得屠殺”(296쪽).

[현종 선천 2년(713) 봄 정월 칙서를 내려 江北 諸州의 團結兵馬<sup>106)</sup>는 모두 本州刺史가 관장[押掌]하게 하였다.<sup>107)</sup> 을해일(11일) 이부상서·검태자우유덕·찬국공 소지충이 중서령에 임명되었다. 상원일 밤에 상황이 안복문에 거둥하여 연등을 관람하였다.<sup>108)</sup> 나인을 내보내 소매를 나란히 하고 답가하게 하고는 백관들로 하여금 마음껏 이를 구경하게 하였는데, 하룻밤 내내 하고서야 비로소 파하였다.

2월 병신일(3일) 隆州를 閩州,<sup>109)</sup> 始州를 劍州로 개칭하였다. 冀州를 나누어 深州를 설치하였다. 이전에 僧 婆陁가 밤에 [城]門을 열고 수백 수천의 등불을 밝히길 청하니, 사흘 동안 밤마다 이어졌다. [경자일(7일)] 황제가 연희문에 거둥하여 연등을 관람하고 마음껏 즐기니, 무릇 사흘 동안 밤마다 이어졌다. 左拾遺 嚴挺之가 상소하여 간언하니, 마침내 그쳤다.<sup>110)</sup> 【[신라 성덕왕 12년(713) 2월]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니 현종

106) 단결병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日野開三郎, 「唐府兵制時代における團結兵の稱號とその普及地域」, 「唐府兵制時代の團結兵について」, 『唐代藩鎮體制の研究』(日野開三郎全集1), 三一書房, 1980, 176~253쪽 참조.

107) 『당회요』 권69, 都督刺史已下雜錄, “先天二年勅, 河北諸州, 加團練兵馬, 本州刺史押當”(1436쪽).

108) 당대 상원관등 풍속에 대해서는 이시다 미키노스케(石田幹之助), 『장안의 봄』(이동철·박은희 옮김), 이산, 2004, 63~78쪽 및 中村裕一, 『中國古代の年中行事』1, 汲古書院, 2009, 228~251쪽 참조.

109) 『책부원구』 권3, 帝王部3, 名諱, “先天二年正月詔, ‘改隆州爲閩州, 自餘州縣等名有與皇帝名同者, 便令所司改定’”(33쪽).

110) 선천 2년(713) 정월 초의 상원관등에 관한 기사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즉 『당회요』 권34, 論樂에는 “二年正月, 胡僧婆陁, 請夜開門燃百千燈. 其夜, 太上皇御安福樓門觀樂, 凡四日方罷. 是月, 又追作先天元年大酺, 太上皇御諸樓觀之, 以夜繼晷, 盡月不息. 左拾遺嚴挺之疏諫, 乃止”(732쪽)라고 한다. 이외에도 『당회요』 권49, 燃燈에는 “先天二年二月, 胡僧婆陁請夜開城門, 燃燈百千炬, 三日三夜. 皇帝御延喜門觀燈縱樂, 凡三日夜. 左拾遺嚴挺之上疏曰, ‘……’”(1009~1010쪽)라고 하고 『자치통감』 권210, 현종 개원 원년(713) 2월 조에는 “庚子夜(7일), 開門燃燈, [胡三省注: 按舊書嚴挺之傳, ‘先天二年正月望, 胡僧婆陁請夜開門燃

이 樓門에 거둥하여 그들을 접견하였다.】<sup>111)</sup>【예종 선천 2년(713) [2월] 郎將 崔訢을 보내 [大] 祚榮을 左驍衛員外大將軍·渤海郡王에 冊拜하고 아울러 그 통할 지역을 忽汗州로 삼았으며, 더하여 忽汗州都督에 제수하였다. 이로부터 매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112)</sup>

3월 신묘일(28일) 황후가 先蠶에게 제사지냈다[祀].<sup>113)</sup> 계사일(30일)

千百燈] 又追作去年大醮, [胡三省注: 元年, 受內禪, 不及賜天下醮, 乃追爲之.] 大合伎樂. 上皇與上御門樓臨觀, 或以夜繼晝, 凡月餘, [胡三省注: 帝之侈心蓋已發露於此矣.] 左拾遺華陰嚴挺之上疏諫, 以爲, ‘醮者因人所利, 合釀爲歡. 今乃損萬人之力, 營百戲之資, 非所以光聖德美風化也.’ 乃止”(6679~6680쪽)라고 하여,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당회요』와 『자치통감』 등의 기록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고증은 이시다 미키노스케, 『장안의 봄』, 156~159쪽 참조.

- 11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2년(713) 2월 조, “遣使入唐朝貢, 玄宗御樓門以見之”(223쪽). 관련 기록이 『책부원구』 권971, 外臣部16, 朝貢4에는 “[先天二年]二月, 新羅·室韋·吐蕃·處月·突厥·焉耆·於闐, 六月, 南天竺·新羅, 各遣使朝貢. 凡夷狄朝貢, 太上皇皆御門樓以見之”(11237쪽)라고 한다. 당시 파견된 신라 사신은 金貞宗으로,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2년(713) 10월 조에는 “冬十月, 入唐使金貞宗廻, 降詔書, 封王爲驍騎將軍·特進·行左威衛大將軍·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鷄林州刺史·上柱國·樂浪郡公·新羅王”(223쪽)이라고 한다.
- 112) 『구당서』 권199하, 발해말갈전, “睿宗先天二年, 遣郎將崔訢往冊拜祚榮爲左驍衛員外大將軍·渤海郡王, 仍以其所統爲忽汗州, 加受忽汗州都督, 自是每歲遣使朝貢”(5360쪽). 동일 내용이 『책부원구』 권964, 外臣部9, 封冊2에는 “玄宗先天二年二月, …… 是月, 封靺鞨大祚榮爲渤海郡王. 大祚榮, 聖曆中自立爲振國王, 在營州東二千里, 兵數萬人. 至是, 遣郎將崔訢 …… 自是每歲遣使朝貢”(11171쪽)이라고 한다. 이로써 발해는 당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은 김중복,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76~103쪽 등 참조. 한편, 당시 파견된 사신 崔訢은 이듬해인 개원 2년(714) 귀국길에 올라 지금의 遼東半島 旅順 黃金山에 일명 『鴻臚井碑』라는 석각을 남겼는데, 비문에는 “勅持節宣勞靺鞨使·鴻臚卿崔訢, 井兩口, 永爲記驗, 開元二年五月十八日”의 총 29자가 각석되어 있다. 관련 연구로는 권은주, 『鴻臚井石刻』에 보이는 崔訢의 職名 재검토 - “宣勞靺鞨使”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6, 2007 등 참조.
- 113) 『자치통감』 권210, 개원 원년 3월 조, “辛巳(18일), 皇后親蠶. [胡三省注: 舊制,

制·勅·表·狀·書·奏·牋·牒의 年月 등의 숫자는 一十·[二十]·三十·四十字로 하게 하였다.<sup>114)</sup>

여름 6월 병진일(24일) 병부상서·삭방도행군대총관 곽원진에게 동중서문하삼품을 더하였다.

가을 7월 갑자일(3일) 태평공주가 僕射 竇懷貞, 侍中 岑羲, 中書令 蕭至忠, 左羽林大將軍 常元楷 등과 함께 謀逆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주살하였다. 그 당여를 철저히 조사하여 太子少保 薛稷, 左散騎常侍 賈膺福, 右羽林將軍 李慈·李欽, 中書舍人 李猷, 中書令 崔湜, 尚書左丞 盧藏用, 太史令 傅孝忠, 僧 惠範 등이 모두 주살되었다.<sup>115)</sup> 병부상서 곽원진이 황상이 승천문루에 거동할 때 수종하였다. 천하에 大赦를 내리고 大辟罪 이하는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사면(赦除)하였다.<sup>116)</sup> 다음날(4일) 태상황이 誥[書]를 내려 말하기를, “짐은 장차 높은 곳에 머물며 무위하려 하니, 지금부터 軍國刑政 일체의 사안 이상은 모두 황제의 처분을 취하라”<sup>117)</sup>라고 하였다.<sup>118)</sup>

개원 4년(716) 여름 6월 갑자일(20일) 태상황제가 百福殿에서 붕어하니, 당시 나이 55세였다. 가을 7월 기해일(25일) 황상이 시호를 올려 大聖

有皇后祀先蠶親桑之禮。後周制，皇后衣十二等，採桑服錦衣。唐制，皇后親蠶服鞠衣，黃羅爲之。”(6680~6681쪽).

114) 『당회요』 권26, 牋表例, “先天二年三月三十日誥, ‘制·勅·表·狀·書·奏·牋·牒, 年月等數, 作一十·二十·三十·四十字’”(588쪽); 『책부원구』 권60, 帝王部60, 立制度1, “玄宗先天二年三月癸巳詔, ……”(636쪽).

115) (淸) 王鳴盛, 『十七史商榷』 권71, 太平公主謀逆事에서는 “…… 攷此所書誅殺者, 其中有崔湜·盧藏用, 而玄宗紀七月三日, …… ‘丁卯, 崔湜·盧藏用除名流嶺表’, 是二人未誅, 僅流徙也, ……”(618~619쪽)라고 하여, 중서령 최식과 상서좌승 노장용은 당시 주살된 것이 아니라 영남으로 유배되었다고 한다.

116) 『전당문』 권19, 睿宗皇帝2, 「誅竇懷貞等大赦誥」, 226쪽.

117) 『전당문』 권19, 睿宗皇帝2, 「命皇帝處分軍國刑罰誥」, 227쪽.

118) 『자치통감』 권210, 개원 원년 7월 조, 6681~6686쪽. 현종 즉위 이후 태평공주 일파의 제거과정에 대해서는 閻守誠·吳宗國, 『당현종』, 52~57쪽.

貞皇帝라 하였고 묘호를睿宗이라 하였다. 겨울 10월 경오일(28일) 橋陵<sup>119)</sup>에 장사지냈다. 천보 13재(754) 2월 시호를 玄真大聖大興孝皇帝로 고쳤다.

史臣이 말한다. 법이 균일하지 않으면 간사한 자들이 출현하고 정치가 통일되지 않으면 봉당이 발생하니, 위에서 이미 그 연원을 밝혔음에도 아래에서 어찌 명리만을 좇는 데에 그치는가! 살펴보건대 무릇 무척 천 시절에는 장역지·장창중 형제[二張]의 저택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중종의 치세에는 태평·장녕·안락공주[三王]의 대문에 파도처럼 몰려 들었다.<sup>120)</sup> 진기한 물품을 바쳐 관직에 제수된 자들이 조정애 가득하였고 뇌물을 바쳐 斜封된 자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다.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며 간교한 이득만을 추구하였으니, 심연애 던져진 불처럼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경릉 연간(710) 예종이 계위하면서부터 더러운 풍속은 일소되었으나, 여전히 현종과의 사이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投杼]<sup>121)</sup> 태평공주와의 자리에서 맞장구치게 하였다.<sup>122)</sup> 투서로 빈번히 고변하여 황상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할 지경에

119) 교릉에 대해서는 유향양·추교순,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 서경문화사, 2012, 175~206쪽 참조.

120) ‘三王’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淸) 王鳴盛, 『十七史商榷』 권71, 睿宗論誤字에서는 “舊睿宗論, ‘孝和之世, 波注於三王之門.’ 三王當作三主, 謂太平公主·長寧公主·安樂公主也”(619쪽)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王鳴盛의 견해에 의거하여 해석하였다.

121) 『戰國策』 권4, 秦2, 秦武王謂甘茂, “昔者曾子處費, 費人有與曾子同名族者而殺人, 人告其母曰, ‘曾參殺人’, 曾子之母曰, ‘吾子不殺人’, 織自若. 有頃焉, 人又曰, ‘曾參殺人’, 其母尚織自若也. 頃之, 一人又告之曰, ‘曾參殺人’, 其母懼, 投杼踰牆而走. 夫以曾參之賢, 與母之信也, 而三人疑之, 則慈母不能信也”(上海古籍出版社, 150쪽). 여기서는 증자의 고사처럼 참소를 거듭하여 예종과 현종의 사이를 이간하였다는 의미이다.

122) (淸) 王鳴盛, 『十七史商榷』 권71, 睿宗論誤字에서는 “舊睿宗論, …… 又投杼於

이르자, 근신들은 현혹에 대처하는 방도를 찾았고 천자는 변경을 순찰하라는 조서를 의심하였다.<sup>123)</sup> 저들이 이미 활을 당겨 우리를 겨냥하였으니, 우리는 울부짖으며 형벌을 집행하였다. 이는 비록 태평공주의 허물이지만 또한 예종의 잘못이다. 무릇 군주된 자가 효성과 우애로 전범을 제시하여 본받도록 한다면 참람히 군주를 핍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래에서 분수에 넘치는 바람을 끊게 될 것이니, 자연히 치도가 혁신되어 재앙의 근원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종은 이미 이에 실패하였고 예종도 역시 얻은 것이 없었다.

贊하여 말한다. 중종과 예종은 모두 고종을 닮아 타고난 성정이 예에 어긋나고 일신의 쾌락만 취하였다. 평탄한 길을 밟지 않고 실패한 전철을 좇았으나 聖嗣를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 賢臣이 있었기 때문이다.

---

乘輿之間, 抵掌於太平之日’, 日當作席”(619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王鳴盛의 견해에 의거하여 해석하였다.

123) 현종 선천 원년(713) 11월 태상왕 예종이 고서를 내려 황제의 변경 순찰을 명한 일을 말하는데, 즉 『자치통감』 권210, 선천 원년 11월 조에는 “上皇誥遣皇帝巡邊, 西自河·隴, 東及燕·薊, 選將練卒”(6679쪽)이라고 한다. 아울러 『전당문』 권19,睿宗皇帝2, 『命皇帝巡邊誥』, 225~226쪽 참조.

